201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 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8.36	81.44	104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7.0	10.8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4.0	16.61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 존율	4.52	4.75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분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7.89	8.1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석 항	경상적 경비 비율	5	4.41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목	일몰제 적용률	11	12.59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4.36	13.43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0.09	10.49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26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목 차

1. 체육진흥기금	••••••	1
2. 공공·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5
3. 중소기업육성기금		8
4. 자활기금		13
5. 노인복지기금		17
6. 여성발전기금		22
7.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28
8. 옥외광고정비기금		32
9. 도로굴착복구기금		36
10. 재난관리기금		40
11. 식품진흥기금		45

1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 설치목적 : 구민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진흥을 위한 재원의 안정성 확보

· 설치연도: 2000년

- 조례제정 2000.11.30 조례 제485호, 개정 2001.3.28 조례 제508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그
수입	지출	13년달 조정책	수입	지출	증감	
274	360	286	154	175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13년도)
 - 학교체육육성(관내학교운동부지원 등): 64백만원
 - 생활체육기반조성(체육시설설치 및 유지보수): 204백만원
 -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지원(연합회지원·체육행사지원 등): 56백만원

○ 잘된젂

- 관내학교 운동부 및 학교 운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체육꿈나무를 육성하고, 학교운동부를 활성화하여 각종대회에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둠
- 소규모 체육시설의 설치·보수공사를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수준 향상에 기여
- 종목별 연합회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동호인 저변확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각종 대회에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지역교류 활성화에 기여

○ 미흡하점

-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여 급증하는 생활체육 인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마련이 어려움

- 발전방안 및 향후조치계획 등
 - 다양한 프로그램과 개발과 탄력성 있는 시간대의 운영으로 남녀노소 모두 쾌적한 환경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생활체육동호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확대
 - 관내 체육시설물의 신설·유지보수를 통해 주민과 생활체육동호인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92	388	99	562	360	6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2012년도에는 392백만원 지원목표에 388백만원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는 562백만원 지원목표에 360백만원 지원함으로써 202백만원 예산절감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체육진흥기금사업(392백만원) 관내학교운동부지원사업(80백만원) 생활체육동호인활성화지원사업(87백만원) 생활체육 기반조성 사업(180백만원)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45백만원)	체육진흥기금사업(388백만원) 68백만원 83백만원 195백만원 42백만원	99%
'13년	체육진흥기금사업(562백만원) 관내학교운동부지원사업(65백만원) 생활체육동호인활성화지원사업(87백만원) 생활체육 기반조성 사업(365백만원)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45백만원)	체육진흥기금사업(360백만원) 64백만원 54백만원 204백만원 38백만원	64%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중구체육진흥기금 설치및운영조례	구민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육진홍을 위한 재원의 안정성확보	생활체육 기반조성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 및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기타 생활체육관련 사업 추진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입금 중 장외지점이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에 배분되는 지방재정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관내체육시설물의 신설 및 유지보수, 생활체육동호인 또는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속적인지원을 통해, 주민과 생활체육 동호인에게 쾌적한 운동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생활체육 활동 여건을 개선하여,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적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존치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체육진흥기금	360맥만원	경륜사업지원금과 전년도이월금으로 당해 연도 집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신축적집행과 안 정성에 문제가 있음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입금 중 경륜·경 정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수익금으로 기금목적사업과 연계성이 많음.
- 기금의 조성 규모(수정)

(단위:백만원)

연 도	기조성액	2011	2012	2013	2014	총 계
기금조성액	4,680	249	289	208	74	5,500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1 '	년	'12	년	['] 13	년
	합 계	635	%	<i>7</i> 59	%	646	%
	전입금	249	39%	289	38%	208	32%
	보조금						
	차입금						
수 입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29	52%	410	54%	372	58%
	예수금						
	이자수입	9	1%	14	2%	18	3%
	기타수입	47	7%	46	6%	48	7%
	합계	635	%	759	%	646	%
	비융자성사업비	225	35%	388	51%	360	5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a) >	기본경비						
지 출	예탁금						
	예치금	410	65%	371	49%	286	44%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새로운 여가문화의 시대가 열리고 생활체육 인구의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 동호인과 구민들의 수준 있는 체육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육시설 지원 등 각종 체육진흥 시업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기금확보 필요

공공 · 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2

○ 설치년도: 1994년도

○ 설치목적 :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연혁

- 1994. 12. 22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제정

- 1994 ~ 2004 기금액 629억 조성(출연금 437억, 이자 192억)

- 1995 중구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

- 1998 ~ 2004 토목과 자재창구 및 충무아트홀, 신당1동·인천 당하동·. 신당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 2005 광희동 청사부지 매입
- 2007 ~ 2008 을지경로당 및 노인회관 부지매입, 구청사내 국유지 매입
- 2009 ~ 2010 신당구립도서관 및 영유아플라자 등 부지매입으로 총사업비 629억 지출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1	4 년 운용계	획	비고
수입	지출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P <u>1/</u>
2	_	61.8	1,680	_	1,68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일반회계 및 타 기금과의 중복성이 없음

- 구민의 복지·문화향상을 위하여 종합복지관,충무아트홀,노인회관,구립도서관, 여성회관등 건립부지 매입비 지원으로 적극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2004년 이후부터 기금출연이 전혀 없으며 장기화된 경제침체로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문화 수요에 대처하고자 지속적인 기금의 조성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 해당없음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지방자치법제142조, 서울특별시중구공용· 공공용의청사·시설부 지매입기금설치및운 용조례	또는 제반사항의 변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물 매입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축비 등 기타부대경비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해당없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수입 및 지출 실적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1	년	'12	년	'13	년
	합 계	58	%	60	%	62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수 입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6	97%	58	97%	60	97%
	예수금						
	이자수입	2	3%	2	3%	2	3%
	기타수입						
	합 계	58	%	60	%	62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지 출	예탁금						
	예치금	58	100%	60	100%	62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장기적인 경기침체화로 기금조성이 어려우나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고자 지속적인 기금의 조성이 필요함

3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연도: 1993년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설치목적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인들의 사업의욕을 고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1	'14년 운용계획			
수입	지출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비고	
6,337	6,188	4,923	5,857	7,401	△1,544		

■ 기금총액: 20,369백만원(2013.12.31기준)

- 1993년부터 9회에 걸쳐 기금전출금으로 10,900백만원, 대출금 상환이자 및 예 치금 이자수입으로 9,469백만원을 조성

구 분	총계	93~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0,369	11,008	474	1,783	534	529	457	1,532	481	506	528	509	505	497	523	503
기 금 전출금	10,900	8,800	1	1,000	1	-	•	1,100	-	-	-	-	•	-	-	
증 식 이 자	9,469	2,208	474	<i>7</i> 83	534	529	457	432	481	506	528	509	505	497	523	50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융자지원 현황
 -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38개 업체에 93,864백만원을 지원
 - 상환기간 및 금리변동
 - 상환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대출금리를 8%에서 2.8%로 점차 인하
 - 특별신용보증제도 확대
 -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6억원 출연(60억원 보증추천)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수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도 골고루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 하여 기업체가 자금난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담보능력이 부족하나 사업성이 유망한 기업체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 신 용보증 추천을 적극 활용하여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에 융자수혜를 확대하여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 12 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900	5,672	81.9	7,201	6,188	85.9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관내 중소상공인에게 5년 상환기간의 조건으로 저금리 융자지원하여 융자수 예업체의 만족도 높음
- 일반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업체에 특별보증추천제를 활용하여 융자지원하여 영세업체의 성장 촉진 및 융자실행률 제고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 (6,800백만원, 130개소)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 (5,572백만원, 97개소)	81.9%
'13년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 (7,100백만원, 130개소)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 (6,087백만원, 97개소)	85.9%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刊	고
서울특별시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전·기술·시설자금 융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38개 업체에 93,864백만원을 지원

구분	총계	′93~′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용 자 건 수	1,238	218	62	45	50	62	40	53	66	69	73	62	121	123	97	97
융자액	93,864	16,704	6,717	5,375	4,067	5,205	4,234	4,380	6,954	6,373	5,106	5,283	5,471	6,336	5,572	6,087

- 2005년부터 담보능력은 부족하나 사업성이 유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신용보증추천 실시
 - 서울신용보증재단에 6억원 출연(60억원까지 추천가능, 2013.12.31.기준)

■ 연도별 상환기간 및 금리변동

연 도	거치기간	상환기간	대출금리	대여금리	비	고
1993~1999	1년	3년	8%	7%		
2000~2001	1년	3년	6%	5.2%		
2002~2004	1년	3년	4.8%	4%		
2005	1년	4년	4%	3.2%		
2006~2010	1년	4년	3.8%	3%		
2011	1년	4년	3.5%	2.7%		
2012	1년	4년	3.2%	2.4%		
2013	1년	4년	2.8%	2.0%		

- 중소기업의 융자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상환기간을 3년에서 4년 으로 연장하고, 대출금리를 8%에서 2.8%로 점차 인하하였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	7,200백만원	전년도 이월액과 당해 상환액으로 당해연도 융자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신축적 집행이 어려움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구비의 일반회계 출연금, 융자금 상환액,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대출이자) 및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융 자금은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회수된 기금을 재융자하고 있음
 - 일반회계 출연금 : 10,900백만원
 - 이자 등 운용수익 : 9,469백만원 (2013. 12. 31. 기준)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11		'12	1	'13	ı
	합 계	10,534	%	10,446	%	11,11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6,586	62.5	6,157	58.9	6,239	56.2
수 입	(이자포함)	0,000	02.5	0,137	36.9	0,239	30.2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910	37.1	4,198	40.2	4,773	42.9
	예수금						
	이자수입	38	0.4	91	0.9	98	0.9
	기타수입						
	합 계	10,534	*	10,446	%	11,110	%
	비융자성사업비			100	1.0	100	0.9
	융자성사업비	6,336	60.1	5,573	53.3	6,087	54.8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지 출	예탁금						
/\ = 	예치금	4,198	39.9	4 <i>,</i> 773	45.7	4,923	44.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관내 중소기업체의 경영안정 지원, 기업성장을 위하여 기금 예산 증액
- 융자실행률 제고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추천제 적극 활용

4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년도 : 2006년
 - 설치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 ·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조성)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에 기여하고자함.
- 기금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1	- 비 코		
수입	지출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P <u>1/</u>
248	8	661	24	15	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기금운용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금증식사업을 위주로 하였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참여하는 신규자활근로사업단(집수리사업단, 제과제빵사업단)의 장비 구입, 강사료 등 초기 사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800만원 지출을 함.
-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적립된 기금의 30% 범위 내에서 활용토록 하되, 나머지는 기금 운용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기금 증식사업으로 적극 운용을 할 계획임.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 융자 등 자활사업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	4	13	-	8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12년 당초계획 전세점포임대융자(30백만원) ※'12년 변경계획 전세점포임대융자(15백만원) 사무관리비(5백만원) 	○ 자활사업평가 민간회계용역 수수료(4백만원, 1개소)	13% (27%)
'13년	 ※'13년 당초계획 ○ 지출계획 없음 ※'13년 변경계획 ○ 고유목적사업비(8백만원) 	○ 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 자활 근로사업단 사업비 (8백만원, 1개소)	-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刊	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조례	-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의하 재원으로 화요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비 및 임대료 지원자활대상자를 위한 복지증진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 목표액 (1,000백만)이 달성될 시까지 기금조성에 치중하였으나, '11년 보건복지부의 자활기금활성화 추진계획 및 권고에 따라 신규 추진 사업 단(2013.07.)의 자활근로사업비 800만원지출을 통한 자활근로사업의 원활한 운영 추진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법적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필요성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조성
 -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 교부금 또는 출현금
 -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 기금의 이자 수익금 등
- 기금조성규모

(단위:백만원)

14 =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인도	계	출연금	수입	계	출연금	수입	계	출연금	수입
금액	25	-	25	26	-	26	248	-	248

○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 :	1	'12	2	'1 :	3
	합 계	419	%	425	%	669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수 입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399	93.9		
	예치금회수	394	94			421	62.9
	예수금						
	이자수입	11	2.6	14	3.3	17	2.5
	기타수입	14	3.3	12	2.8	231	34.5
	합 계	419	%	425		669	
	비융자성사업비	20	4.8	4	0.9	8	1.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지 출	예탁금						
' -	예치금	399	95.2	421	99.1	661	98.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 목표액(1,000백만)이 도달되기 전까지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계속 적립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그 외의 나머지는 기금운용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금증식사업에 운용토록 함.
- 기금존속기간('16.12.31.)동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기금목표액(1,000백만)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출연금 예산지원관련 의회 적극 건의 필요

5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0.11.30 : 서울특별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신설

- 2001.03.17 : 150.000천원 최초 적립

- 2004.04.26 : 서울특별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신설

- 2009.02.25 : 서울특별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

- 2011.06.07: 서울특별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

- 2012.11.06: 서울특별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

○ 기금조성현황

(단위: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1	4년 운용계	획	'14년도말	111-
수입	지출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추정액	비고
74	62	2,131	57	92	△35	2,07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중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4.97%인 19,407명(전체인구129,643명)임.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양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임. 따라서 급증하는 노인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안정적, 지속적 전개 및 확대로 보다 많은 노인이 노인복지의 수혜대상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저소득 노인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및 다양한 노인교육 지원으로 노인의 권익신장 및 사회활동 지원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 적립하여 예산편성에 유동성을 주고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5	25	73.2	80	62	7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및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지원을 통하여 다수 노인이 참여하는 각종 노인행사 지원으로 노인의 권익신장 향상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하였고,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등에서 추진중인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에서 사업추진 미비로 인하여 사업목표가 다소 미흡하였으며,
- 저소득 어르신 세탁사업 지원으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노인의 세탁 등일상생활 지원에 기여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 기여라는 노인 복지기금 설치목적에 부합운영.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운영지원(17백만원) - 조직강화사업 - 경로당지도자교육 - 경로당 지원사업 - 권익신장사업 ○ 노인건강사업 및 취미활동지원 (26백만원) ○ 저소득어르신 지원 세탁사업 (8백만원) 	 ○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운영지원(17백만원) -조직강화사업 -경로당지도자교육 -경로당 지원사업 -권익신장사업 ○ 저소득어르신 지원 세탁사업 (분기별 교부 8백만원, 200명수혜) 	49%

	○ 대한노인회중구지회	○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운영지원(45백만원)	운영지원(45백만원)	
	- 조직강화사업	- 조직강화사업	
	- 경로당지도자교육	- 경로당지도자교육	
'13년	- 경로당 지원사업	- 경로당 지원사업	87%
	- 권익신장사업	- 권익신장사업	07 70
	○ 노인건강사업 및 취미활동지원	○ 노인건강사업 및 취미활동지원	
	(26백만원)	- 게이트볼, 체육대회, 무료영화상영 등	
	○ 저소득어르신 지원 세탁사업	○ 저소득어르신 지원 세탁사업	
	(8백만원)	(분기별 교부 8백만원, 200명수혜)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중구노인 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기여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육성거동불편 재가노인 세탁사업지원노인건강및취미활동지원	

- 2001년 1억5천만원 적립을 시작으로 2009년 20억 조성목표로 기금을 적립하여 왔으며, 10억 조성 이후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지원 및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의 저소득 독거노인 세탁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 2013년 12월말 노인복지기금 2,131백만으로 목표 초과달성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의 지적사항: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천원)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운영 지원	45,000	안정성	상
② 저소득어르신 지원 세탁사업	8,000	신축적 집행	상
③사무관리비 (심의위원참석수당)	630	신축적 집행	중
④노인건강사업및취미 활동지원	34,000	신축적집행	상
합계	79,63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11		'12		'1 3	3	비고
	합 계	2,125	/%	2,144	%	2,193	%	
ر ا ک ۱۵	전입금	-	-	1		-		
수 입	예치금회수	2,055	96.7	2,060	96.1	2,119	96.6	
	이자수입	70	3.3	84	3.9	74	3.4	
	합 계	2,125	%	2,144	%	2,193	%	
지 출	비융자성사업비 (고유목적사업비)	65	3.1	25	2.2	62	2.8	
	예치금	2,060	96.9	2,119	98.8	2,131	97.2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65세이상 노인인구(중구 14.97%, 노인인구 19,407명, 전체인구 129,643명)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복지 욕구가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급증하는 노인복지수요에 신속하고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복지증진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인 바, 노인복지기금의 지속 적립으로 고령화시대에 급증하는 노인복지수요에 보조를 맞출 필요성 있음.

6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3. 03. 18 중구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 제정
 - 2004. 09. 24 중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 폐지)
 - 2013년 말 기금액 1,332백만원 조성
 - ※ 출연금 1,200백만원, 이자 132백만원
 - 2010년 ~ 2014년까지 33단체 234백만원 지원
- 사업개요
 - 기금목표액 : 2,000백만원
 - 재 원 조 성 : 자치단체 출연금, 기타 수입금
 - 지 원 대 상 :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및 단체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1 _'	'14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P <u>1</u> '
55	42	1,333	42.2	42	△ 0.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중구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조성해 온 기금으로써, 일반회계 및 타 기금과의 중복성이 없음
- 2010년도부터 여성발전기금 지원 대상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대상사업으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여성단체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신한 사업을 공모·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사업, 양성평등 촉진, 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여성인권사업, 건강가정육성사업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음
-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11년도 11개 공모 사업 중 6개 사업 선정 48백만원 지원
 - 2012년도 13개 공모 사업 중 6개 사업 선정 46백만원 지원
 - 2013년도 12개 공모 사업 중 8개 사업 선정 48백만원 지원
 - 2014년도 14개 공모 사업 중 8개 사업 선정 40백만원 지원
- 잘된 점
 - 최초 계획 대비 98% 집행실적을 거둒
 - 지원 단체 중간 지도 및 점검 실시하여 투명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함
- 미흡한 점 : 해당사항 없음
- 향후계획
 - 서울시 구별 기금 조성현황 비교 결과 우리구 기금조성액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구 예산부족 및 은행 저이율 등으로 목표액 재설정 및 잠자는 예산 절감 검토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7	41	87	50	42	8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2012년도에는 다문화가정의 여성을 위한 적응지원 프로그램 "Happy Together", 가정 폭력·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 프로그램, 노인교육 전문강사(노인종이조형지도자)파견사업, 슈퍼내니 프로젝트, 발달장애학생 모(母)의

사회지지망 구축을 위한 자치동아리 프로그램 "맘마!미(美)아(我)!", 성평등 가족문화를 위한 에코젠더 가족학교 사업 등에 지원하였으며 사업계획서 대비 97%의 참여율을 보였고

○ 2013년도에는 일하는 엄마를 위한 심리 참여극<엄마, 오늘 회사 안 가면 안돼?>, 혼례 지도자 인증 과정, 하하호호프로젝트(하나하나의 가족이 호탕하게 웃을때까지~), 여성 노인의 삶의 의미찾기 및 세대간 소통-"독앤통 (TALK and 通), 노인교육 전문강사(노인종이조형심리미술지도사)파견사업, 손자녀양육코칭프로그램(보육교직원 상담역량강화교육, 자녀양육지원 사업),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호텔룸메이드 양성과정 등에 지원하였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여성복지증진사업 공모 및 선정(47백만원 범위 내)	○기금지원사업 13개 중 6개단체 선정 (40백만원 지원)	85%
'13년	○여성복지증진사업 공모 및 선정 (50백만원 범위 내)	○기금지원사업 12개 중 8개 단체 선정(42백만원 지원)	84%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사업, 양성평등 촉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여성인권사업, 취약계층 여성복지 추진 등을 위해 기금설치가 필요함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중구여성발전기본 조례 제28조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사업양성평등 촉진 사업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구분	사업명 (사업단체)	달성도
	-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한 적응지원 프로그램 "Happy Together"	
	- 가정폭력·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	
	- 노인교육 전문강사(노인종이조형지도자)파견사업	
12년	- 슈퍼내니 프로젝트(중구보육정보센터)	100%
	- 발달장애학생 모(母)의 사회지지망 구출을 위한 자치동아리 사업	
	(신당사회복지관)	
	- 성평등 가족문화를 위한 에코젠더 가족학교(나무여성인권상담소)	
	- 일하는 엄마를 위한 심리 참여극<엄마, 오늘 회사 안 가면 안돼?>(더베프)	
	- 혼례 지도사 인증 과정(예지원)	
	- 하하호호프로젝트(하나하나의 가족이 호탕하게 웃을때까지~?)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여성노인의 삶의 의미찾기 및 세대간 소통-"톡앤통(TALK and 通)	
1013	(숭의여자대학교)	
13년	- 노인교육 전문강사(노인종이조형심리미술지도사)파견사업	100%
	(한국종이접기협회)	
	- 손자녀양육코칭프로그램 "親老親舊"(친노친구)(약수노인종합복지관)	
	- 슈퍼내니 프로젝트(보육교직원 상담역량강화교육, 자녀양육지원 사업)	
	(중구보육정보센터)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호텔룸메이드 양성과정(중구여성플라자)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11	해당사항 없음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 관련 법규정 근거없이 서면심의로 의결	
	['] 13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권고		
7]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여성복지 향상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42백만원	자치구의 여성정책추진목표에 의거 필요성과 타당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금으로 실시함이 더욱 효율적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조성 개요
 - 조성목적 :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활성화와 복지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을 위한 기반 구축
 - 기금 목표액 : 당초 20억을 목표로 하였으나 서울시 구별 기금 조성현황 비교 결과 우리구 기금조성액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구 예산부족 및 은행 저이율 등으로 목표액 재설정 예정
 - 추진기간 : 2004 ~ 2014년 현재
 - 지원대상 :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11Կ	<u></u>	'12¹	션	'13¹	션
		합 계	1,362	%	1,361	%	1,375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수	입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315	96.5	1,314	96.5	1,320	96
		예수금						
		이자수입	47	3.5	47	3.5	55	4
		기타수입						
		합 계	1,362	%	1,361	%	1,375	%
		비융자성사업비	48	3.5	41	3	42	3.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기	출	예탁금						
		예치금	1,314	96.5	1,320	97	1,333	96.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0억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서울시 구별 기금 조성현황 비교 결과 우리구 기금조액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구 예산부족 및 은행 저이율 등으로 목표액 재설정 및 잠자는 예산 검토 예정
- 2013년 말 현재 1,332억이 조성되어 있어, 당해연도 이자수입 안에서 여 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계속 추진

7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설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 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년도: 1991년
 - 제정 1991.04.09(조례 제147호), 개정 2000.11.30(조례 제486호), 개정 2005.07.20(조례 제670호), 일부개정 2006.05.15(조례 제710호), 일부개정 2011.06.07(조례 제1030호), 일부개정 2012.11.06.(조례 1143호)
-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14년 운용계획		획	비고
수입	지출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74	80	200	53	160	△10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1991년도부터 현재까지 22년간 598 백만원의 출연금과 그 상환금 및 이자수입으로 운용
- 최근 3년(2011~2013년) 기금의 수입·지출을 보면, 한해 평균 대여인원은 26명, 대여금액은 91,611천원이며 평균 상환금액은 102,149천원으로, 과거 3년(2009~20010년)에 비해 수입은 14% 증가하고 지출은 6% 증가
- 또한 대여금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매월 임금에서 원천공제하고 퇴직 시 일시상환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미상환 우려가 없는 안정적인 기금으로,
- 매학기 완납해야 하는 고액의 대학교 학자금이 불황의 시기에 환경미화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등 학자금을 대여해 줌으로써 대부분의 환경미화원들이 자녀학비를 이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음
- 환경미화원의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과 청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금은 존치 하여야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2 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60	78	49	160	81	5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	400/
12연	(160백만원, 40명)	(78백만원,25명)	49%
(40) d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	E00/
'13년	(160백만원, 40명)	(80백만원 , 23 명)	5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 설치 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지방지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환경미화원의 생활 안정 및 사기진작	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 목적의 달성정도
 -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들의 학자금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사기진작을 통한 깨끗한 중구 환경 조성에 기여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11	해당없음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기금 존속기한, 심의위원회 등 조례 개정	
	'13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사업	80백만원	전년도 이월액과 당해 상환액 및 이자금액으로 매월 융자금액이 결정됨 으로 예산편성 예상집행액을 파악하기 힘들며, 우리구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 사업으로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에 따른 매월 상환금 원천징수, 등 별도관리가 필요함	_

4. 사업의 유사성